

2023학년도 대학(대학원)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

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 제10항 및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2조의2에 의거 2023학년도 대학(대학원)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7일

부총리 겸 교육부장관

1. 관련 근거

■ 「고등교육법」

제11조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(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)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(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,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 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.

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.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.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행정적·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.

■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

제2조2(등록금인상률의 산정방법) ① 법 제11조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,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. 이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면제·감액되는 등록금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.

② 제1항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.

제8조(공고 등)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2.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

-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(2.7%) × 1.5배 = 4.05% 이하
<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산출근거 >

| 구분 | 2020년(a_1) | 2021년(a_2) | 2022년(a_3) |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|
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물가상승률 | 0.5% | 2.5% | 5.1% | 2.7% |
| 산출근거 | 통계청 발표 (전년대비) | 통계청 발표 (전년대비) | 통계청 발표 (전년동기대비) ^{주1)} | 기하평균(=r) ^{주2)} |
| 주1) 2021년 1~11월 대비 2022년 1~11월까지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주2) 변동률에 대한 평균은 기하평균으로 산출 $r = (\sqrt[3]{(1 + \frac{a_1}{100}) \cdot (1 + \frac{a_2}{100}) \cdot (1 + \frac{a_3}{100})} - 1) \times 100 = (\sqrt[3]{1.005 \times 1.025 \times 1.051} - 1) \times 100 = 2.7\% \text{ (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)}$ | | | | |

3. 평균등록금 산출방식

-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하여 산출하되, 대학원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원, 전문대학원,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·박사·석박사 통합 과정을 구분함이 없이 산출함

※ 학부 평균등록금 = 전체 등록금(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×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)의 합 / 전체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
 ※ 대학원 평균등록금 = [전체 등록금(학과별 학기별 등록금 ×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)의 합 / 전체 학과별 학기별 입학정원의 합] × 2

- 평균등록금은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대학별 등록금의 대푯값을 의미하므로 계열과 학년을 따로 구분하지 않음

○ 단, 학부(대학원)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도, 정보공시 상 모든 계열별 평균등록금*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봄

* 계열별 등록금(학과별 학년별 등록금 ×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)의 합 / 계열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

- 입학금과 등록금(수업료)의 인상률을 각각 산출

- 학부 입학금 실비용분을 등록금에 산입하는 대학(입학금 폐지대학)은 해당 산입분을 제외하고 인상률 산정(계열별 인상률도 동일)

【 입학금 폐지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식 】

$$\frac{\text{폐지년도 평균등록금} - \text{폐지전년도 평균등록금} - (\text{'17년 평균입학금*의 } 20\%^{**} \times \text{폐지년도 1학년 입학정원} / \text{폐지년도 편제정원})}{\text{폐지전년도 평균등록금}} \times 100$$

- * 2017년 입학금은 대학정보공시자료(9-가-1)를 활용하되 천원단위 미만은 절상
- ** 4년제 대학은 '17년 평균입학금의 20%, 전문대는 33%, 사이버대는 '19년 평균입학금의 33%

※ 입학금 폐지 2년차부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평균등록금 인상률 산정

-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신설하는 전문대학은 해당 편제완성연도까지 해당과정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 산정(계열별 인상률도 동일)

- 단, 신설된 전문기술석사과정별 평균등록금은 편제완성연도까지 등록금 인상률 법정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

- 학사제도 유연화(다학기제, 유연 학기제, 수업연한 단축 등) 적용 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

- 단, 필수 등록학기를 연 3학기 이상 운영하고 수업연한이 단축(1년, 학칙 규정 필수)되는 학부과정에 한하여, 단축한 수업연한을 고려하여 학과별·학년별 연간 등록금 산정

【 다학기제·유연학기제 학과(과정)의 학년별 연간 등록금 산식 】

$$\text{학과별·학년별 연간 납부등록금 총액} \times \frac{\text{기존 수업연한} - \text{단축 수업연한}^*}{\text{기존 수업연한}}$$

* 단축 수업연한(사례) : 12개월 미만 단축 → 0년

- 정원 내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산출하되, 교육국제화 특구 내 대학(캠퍼스)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제외

-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되, 사이버대학의 경우 1~3학년은 연 36학점,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